

『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 -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성별 고려 위촉 명시
 - 평생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
 - 위원회 간사 변경 : 사서담당주사 → 도서관장
 - 서기는 사서담당주사로 위촉
 - 운영위원 위촉자 변경 : 도서관장 → 평생교육원장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에 따라 구미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평생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성별 고려 위촉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, 위원회 간사를 사서담당주사에서 도서관장으로, 서기를 사서담당주사로 하고 운영위원 위촉자를 도서관장에서 평생교육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임.
-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,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미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